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





-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 피보험자격 관리
-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4 고용보험료 지원
-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6 웹툰분야 적용기준
-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고용, 도급, 외주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행에서 상시적으로 노무제공을 받는 것을 의미
- 일시적, 일회적 타인 사용의 경우는 불포함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

※ 제외

- 무상 노무제공 용역
- 노무제공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방식 및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적용제외

(연령)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제외**

(소득)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만,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 신청에 따라 적용 가능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음

● 보험가입자

-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주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적용

1. 고용보험 적용

보험관계의 신고

●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특이사항

기존에 일반근로자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어도

예술인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관리번호 부여 받아야 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성립신고서 작성방법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제1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용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한글(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계좌 사전신고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한글(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 희망일	[] 남기일 [] 남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접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허자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 (장)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근로자 중사 [] 예술인 중사 사업(장)				
고용보험	[] 근로자 중사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예술인 중사 사업(장)	예술인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산재보험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고용보험만 체크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

3 고용보험만 작성

- '예술인 중사사업장' 체크
- '피보험자수'와 '예술인수'는 취득일 현재 예술인인 피보험자 수 기재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 예술인



1. 고용보험 적용

서면계약 체결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시정명령 등 위반)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어서와~
예술인 고용보험
처음이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잠깐,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과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서면계약서와 함께 하세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존계약으로 고용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문화예술용역 간이 계약양식을 이용한 계약서 재 작성

- 기존의 계약으로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불확실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고용보험>(고용보험용)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일반))

어서와~

예술인 고용보험 처음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요!

Q.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기존의 계약서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기간이나 보수지급방식에 대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간이 계약양식'을 활용해 추가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식 다운로드: 예술인 고용보험 웹페이지(artinsure.kawf.kr)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 통 약식은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권본적 계약양식입니다. 예술계 현장에서는 통 약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 약식을 활용하여 계약을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사업주	업제명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계약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예술인	부 계약 당사자(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이 1인일 경우 주 계약당사자란 적성
 ** 통 계약이 정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을 보조하여,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완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총칭함 (주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을 보조하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수의 부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 통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술인(부 계약당사자)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 (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

※ 통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보조)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통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 사업주와 예술인(주)는 통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고용보험 신고 등)를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업무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 분석, 연습, 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업무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정함
 * 예술인인 계약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작성

가. 주 계약당사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부 계약당사자(1)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부 계약당사자(2)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기타 사항:
 ※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

2. 계약대상 (업무내용)
 ① 업무과업의 내용:
 ※ 예술인 계약당사자(주, 부)가 다수일 경우, 각 계약당사자별 내용 기재
 ② 기타:
 ※ 업무수행에 관한 시간, 장소 등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① 계약금액: (총)원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이 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이 기준은 계약 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금액 설정(예: 문화 및 민화분야의 저작권료, 인쇄, 출판대금 등, 미술분야의 일괄 용역대금 등)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기타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계약금액

가. 주 계약당사자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통 약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나. 부 계약당사자 1 ()원
 ※ 부 계약당사자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통 약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다. 부 계약당사자 2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통 약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② 지급방식: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 계좌번호:)

③ 지급시기: 선금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2 기타비용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② 지급방식: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 계좌번호:)

③ 지급시기: 선금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해지 포함)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 사항은 다음에 명시한다.
 예)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수익의 배분, 위임, 책임면제, 자격의 확인, 보증, 보험,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1) 사업주의 권리·의무

 (2) 예술인의 권리·의무

5. 계약의 갱신, 변경 및 해지
 ① ※ 계약의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해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6.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①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예술 분야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

7. 계약의 효력
 계약의 내용을 보존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 단체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 및 보관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2.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 일반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신고 의무

- 원칙적으로 노무제공을 받은 자(사업주)가 신고
- 원칙 : 수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과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부담
- 예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 자격 신고

2. 피보험자격 관리

도급사업 적용특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이
 - ①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발주자**
 - ②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원수급인이**

보험료의 원천징수·납부, 피보험 자격 신고 등을 하도록 함



2.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관리

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일반예술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 자격 관리(취득, 상실 등)
- (단기예술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방식으로 피보험 자격 관리
- (사업주 미신고시) 예술인이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고 가능
- (유의사항) 신고 시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 예술인 직종 및 부과부호입력

과태료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단,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2.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식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처리기간** 5일

3 **직종부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장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직종부호	자격취득일	직종	체류자격	월(명년)보수액	입식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 + 참조하여 번호 기재	
										방문판매원 택배/유통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입적유형 배출수단 종류
1											
2											

* 직종부호 입력번호
 방문판매원: 입적유형
 택배기사 및 유통서비스기사: 배출수단
 화물차주: 기계종류
 건설기계조종사: 기계종류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적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1 고용보험 체크, 예술인 체크
- 2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 3 공통 및 고용보험만 입력
 - 직종부호(취득신고서 뒷면 참조) 기재
 -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체류자격입력

직종 부호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2.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외15서식] <신설 2021. 7.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취품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참고)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5일

2 사업장관리번호: _____ 명칭: _____ 단위사업장 명칭: _____ 영업소 명칭: _____
 사업장 소재지: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_____ 명칭: _____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상실 코드	상실 사유	고용보험				이직일	휴대전화번호	산재보험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이직사유[√]	
						해당 연도	전년도	해당 월	전월			공통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작성
1												<input type="checkbox"/> 계약종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폐업·휴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속성 없음
2												<input type="checkbox"/> 계약종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폐업·휴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속성 없음
3												<input type="checkbox"/> 계약종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폐업·휴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속성 없음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 보험사무대행기관: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택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 고용보험, 예술인 체크
- 2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 3 공통 및 고용보험만 입력

- 직종부호(취득신고서 뒷면 참조) 기재
- 자격상실일: 자격상실 사유 발생 다음날 기재
예) 이직, 노무제공 종료, 사망일 등의 다음날
-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 ◆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 기준 미충족

2. 피보험자격 관리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1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단기 예술인
확인신고서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분

2

신청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사업장: [] 사업장등록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3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재직 체류자격: [] 직종 부호: []

건설기계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4

노무제공일자 ("o"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보수총액: [] 원
이직사유: []

「고용보험법」 제104조의4제2항·제104조의1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 (사용자·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 1 고용보험, 예술인 체크
- 2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입력
- 3 예술인 직종부호 입력

예술인	[창작]		[실연]		[기술지형]	
	창작	창작	실연	실연	기술지형	기술지형
441	(창작)음악	442 (창작)미술	461 (실연)음악	462 (실연)미술	481 (기술지형)음악	482 (기술지형)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83 (기술지형)사진	484 (기술지형)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무용	465 (실연)음악	466 (실연)무용	485 (기술지형)음악	486 (기술지형)무용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87 (기술지형)무용	488 (기술지형)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89 (기술지형)영화	490 (기술지형)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91 (기술지형)만화	492 (기술지형)기타

- 4 노무제공일자 입력
- 5 보수총액 및 이직사유 코드 입력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2.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어서와~

예술인 고용보험
처음이지?

예술인은 생계를 위해 겸업하는 일이 많아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겸업이 잦은 예술인의
노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및 근로자·예술인
으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인정

① 예술인 ↔ 예술인, ② 예술인 ↔ 근로자

* 현행과 같이 근로자로서 이중취득 제한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이중취득 가능

2.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청구

- (보험관계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변경 등으로 월평균보수가 변경될 경우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은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및 노무제공내용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부록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일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④ 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	⑤ 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 해당합니다)		
⑦ 명칭		
사업장	⑧ 소재지	(전화번호)
	⑨ 대표자	⑩ 업종
⑪ 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	
⑫ 청구사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04조의7·제104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5조의3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 피보험자격 관리

복수사업장 소득합산신청 예술인

● 예술인의 소득합산 신청 시 적용가능

(신청대상)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인 예술인

(취득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

(상실일)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

(신고서식)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단, 50만원 이상 되는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신고 불가**

(기준보수 적용제외) 합산소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적용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대상 제외)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정산 미대상

2. 피보험자격 관리

(산정사례)복수사업장 소득합산신청

기준보수
80만원
미 적용

- (A사업주) 계약일자 3.1.~4.30. 월평균소득 30만원 계약
- (B사업주) 계약일자 4.1.~6.30. 월평균소득 30만원 계약
- (C사업주) 계약일자 5.1.~7.31. 월평균소득 35만원 계약

사업주	계약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A	3/1~4/30	30만원	30만원			
B	4/1~6/30		30만원	30만원	30만원	
C	5/1~7/31			35만원	35만원	35만원
합산소득		30만원	60만원	65만원	65만원	35만원

4/1~4/30중 신청 시
4/1~4/30의 기간에 대해 60만원 적용
* 계약1의 계약종료일 이전에 신청함에 유의

5/1~6/15중 신청 시
5/1~6/30의 기간에 대해 65만원 적용

3.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사업자가 각 0.7% 균등부담 (실업급여 요율 1.4%)

2021.06.30.까지는 각 0.8% 균등부담
(20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료율
1.6%에서 1.4%로 인하)

보험료 산정방식

- 예술인의 보수액 x 보험료율

보수의 정의

- (원칙)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산정산식) 보수액 = 계약 상의 총 소득금액 - 비과세액 - 경비

※ 경비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정 비율(20%)로 고시

(산정사례) 계약금액이 300만원 인 경우

300만원 - 60만원(300만원 × 20%) = 240만원

- (예외)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 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단기예술인 및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기준보수 미 적용

3. 보험료 산정·부과

월별 보험료 산정보수 (원칙)

(연도를 이월하여 계속 계약 중인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노무제공 개월 수

(당해 연도에 계약한 경우)

- 1년간 지급예정 보수총액 / 해당 노무제공 개월 수

(산정사례) 월평균 보수

(실 임금 적용)

'21. 3.1~12.31.(10개월)까지 **보수총액이 1,0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 / 10개월 = 100만원 ('22.4월~'23.3월까지 적용)

(기준보수 적용)

'21. 3.1~12.31.(10개월)까지 **보수총액이 500만원**인 경우

- 500만원 / 10개월 = 50만원

- 단,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시에는 **하한액 80만원**으로 보험료 부과

3.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료 정산

-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 연도 중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경우에는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

(산정사례) 정산보험료

월평균보수
(300만원-60만원)/5개월=48만원
기준보수 적용대상
80만원*4개월*1.4%=44,800원 납부

사업주(A) · 예술인(B)간 '21.7.1.~10.30.(4개월), 계약금액 300만원
상실신고서 상의 보수총액 350만원인 경우

-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총액(350만원)**
신고된 보수총액은 하한액을 적용한 보수총액 320만원을 초과하므로 350만원 적용
- **사업주** (추가징수분을 다음 달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액(4,200원) : **(49,000원=350만원×1.4%) - (납부한 보험료 44,800원)**
- **예술인** (지급되는 보수에서 0.7%를 사업주가 원천공제)
(정산보험료 49,000원 × 50%) - (예술인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한 보험료 합계액)

3. 보험료 산정·부과

(산정사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보수 지급 시 보험료

사업주 A가 예술인 B와 2021년 7월 1일~11월 30일(5개월) 동안 총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고, 7월에 계약금 200만원, 9월에 중도금 300만원, 12월에 잔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주 A는 월평균보수 96만원($600\text{만원} \times 80\% \div 5\text{개월}$)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13,440원($96\text{만원} \times 1.4\%$)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술인에게 원천공제)

예술인 B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율(20%)을 곱한 금액을 뺀 160만원($200\text{만원} \times 80\%$), 240만원($300\text{만원} \times 80\%$), 80만원($100\text{만원} \times 80\%$)을 기준으로

예술인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

11,200원($160\text{만원} \times 0.7\%$), 16,800원($240\text{만원} \times 0.7\%$), 5,600원($80\text{만원} \times 0.7\%$)를 원천공제

(예술인 전체소득의 1.4%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0.7% 반반씩 균등부담)

3.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료 상한액 신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0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정안」
월별보험료 상한: 441,150원 연간보험료 상한: 5,293,800원

2021.07.01.부터 예술인의 개인별 보험료가 영 제56조의5제3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 상한액을 개인별보험료로 적용합니다.

다만, 월 중간에 노무제공개시일, 계약종료일, 휴업신고 등으로 보험료를 일할 산정 하는 경우에도 해당월의 월 단위 상한액 적용

✓ (사례) 일반예술인 월별보험료 상한액 적용방법

▪ 취득일: '21. 7. 16.

▪ 월평균보수: 35,755,000원

구분	보험료			상한액	부과보험료
	계(a+b)	예술인(a)	사업주(b)		
7월	258,340	129,170	129,170	441,150	258,340 ¹⁾
8월	500,560	250,280	250,280	441,150	441,140 ²⁾

1) 7월 보험료 산정액이 258,340원으로 상한액 441,150원 보다 적으므로 실제 산정된 보험료 적용

2) 8월 보험료 산정액이 500,560원으로 상한액 441,150원 보다 많으므로 상한액을 한도로 보험료 부과.

다만,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 부담분에서 각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합산함으로써 보험료 상한액보다 10원 적은 금액이 부과됨

3. 보험료 산정·부과

✓ (사례) 일반예술인 보험료 정산방법

- 취득일: '21. 7. 10.~ 9. 9. ▪ 월평균보수: 18백만원
- 기 납부 보험료: 575,980원 ▪ 보수총액: 10천만원

기납부보험료 (a)	정산보험료 (b)	상한액 (c)	정산보험료 부과액(d)	차액 (d-a)
575,980	1,400,000 ¹⁾	1,323,450 ²⁾	1,323,440 ³⁾	747,460(추징) ⁴⁾

- 1) 정산보험료(1,440,000원): 보수총액(9천만원)×1.4%
- 2) 상한액(1,323,450원): 3개월(7월, 8월, 9월)×월상한액(441,150원)
- 3) 정산보험료부과액(1,323,440원): 사업주·예술인 부담분을 각각 산정하여 원단위 절사하게 되므로 상한액과 정산보험료부과액에 차액 10원 발생함.
- 4) 차액보험료(747,460원) 추징

4.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예술인 수는 관계없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만으로 판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된 경우
각 사업별 보수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지원수준

- 사업주와 예술인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는 기간과
별도로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예술인

4.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신규보험가입 사업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체크)

● 기존 보험가입 사업

-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방법

-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①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9개월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 제58조 (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⑤ 단기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지급수준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66,000원)

어서와~
예술인 고용보험
처음이자?

구직급여는 하루 기준으로
얼마나 받나요?

실업 전 평균 1일 임금의 60%
 120~270일 동안 지급

하루기준 상한액은 일반근로자와 동일(66,000원)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 보수의 60%

The infographic features a pink background with a central illustration of two hands exchanging gold coins. The text is in a mix of black and purple fonts, with a small speech bubble at the top left.

실업급여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다만,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전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사례) 사업주(A) · 예술인(B)간 '21.3.11.~12.20.간 계약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산정사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 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경우 그 사유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지급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6.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웹툰분야 적용대상 계약 유형



다음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
(웹툰연재계약)

- MG 또는 원고료를 지급받는 신작을 연재하거나,
- 구작의 연재계약이라 하더라도
개작에 따른 MG 또는 원고료가 지급되는 경우

(기획만화계약)

발주자가 웹툰작가에 창작을 의뢰하고
원고료 등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웹툰제작 기술지원 용역계약)

웹툰 제작과 관련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채색, 배경, 밑색, 식자(대사)작업 등
웹툰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용역이 제공된 경우

6.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사업주 판단

- 웹툰 분야 적용대상 계약 유형에 해당되는 계약당사자를 사업주와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으로 판단
 - 웹툰 연재계약 또는 기획만화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사, 제작사, 에이전시(CP) 등이 사업주
 - 웹툰 제작 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노무제공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사, 제작사, CP, 웹툰 작가 등을 사업주로 판단

*매니지먼트위임계약 등이 체결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의 위임에 따른 계약금 및 수익배분이 주요내용임
☞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을 체결한 CP사와 예술인 간 '고용보험 가입용 간이계약'을 작성하는 등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능

6.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어시스턴트 관련 적용 기준

- 웹툰작가가 어시스턴트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웹툰작가를 사업주로
어시스턴트를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으로 판단
- 웹툰작가가 어시스턴트를 임시·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웹툰작가와 연재계약을 체결한 플랫폼사 등을 사업주로
어시스턴트는 적용제외로 판단

- 상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
 - 어시스턴트를 작업실, 일정한 장소에 출근하게 하여 작업하는 경우
 - 해당 작품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 MG, 원고료를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 용역 대가로 RS를 배분 받는 경우
 - 월평균 수입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고용보험 가입용 간이계약 양식' 등으로 플랫폼사 등과 어시스턴트의 계약기간, 수익배분비율 등을 상호 협의한 경우

플랫폼사 등을 사업주로,
웹툰작가 및 어시스턴트를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으로 판단

6.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기술지원 인력 적용기준

- 웹툰 작가와 계약된 어시스턴트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 등과 웹툰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채색, 배경, 표지디자인, 밑색, 식자(대사)작업 등의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예술인 적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

웹툰분야 적용 직종

- 웹툰작가는 문화예술용역 중 '창작'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되, 웹툰작가와 계약한 어시스턴트와 플랫폼사와 계약을 체결한 웹툰분야 기술지원 인력은 '기술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체부 예규 제56호)'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에서 웹툰제작 기술지원 분야로 '스토리, 콘티, 펜 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을 정하고 있음.

6.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간이계약양식을 통하여 취득신고 하는 경우

- 연재 중 어시스턴트 사용 시
 - 웹툰 연재계약에 따른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가입대상여부를 결정하되,
 - 어시스턴트에게 배분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
- 웹툰 연재 전체 기간 동안 어시스턴트 사용 시
 - 간이계약양식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으로 적용여부 판단

연재기간 중 휴재기간이 있는 경우

- 연재 중 휴재기간이 있는 경우
 - 예술인 휴업 등 신고서를 통해 휴업신고가 가능
 -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휴업기간 중 보험료는 산정되지 않음.

7. 내용정리 (근로자 vs 예술인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문화예술용역 계약 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예술인 (단, 소득합산신청으로 50만원 이상 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입사자 등	65세 이후 신규입사자 등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용안정, 직업능력사업 0.25~0.85%	실업급여 1.4% 고용안정, 직업능력사업 미 적용
실업급여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충족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7. 내용정리 (월평균 보수와 월평균 소득)

월평균소득

적용제외 예술인 판단

계약금액/계약 월수

일반예술인의 경우
50만원 미만 적용제외 처리

월평균보수

월별보험료 산정 및
기준보수 적용여부 확인

$(\text{계약금액} - \text{경비} 20\%) / \text{계약 월수}$

기준보수 80만원 미만 시
보험료는 기준보수로 산정

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실무자료>예술인 으로 검색

유튜브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동영상

1. 보험관계성립신고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i1CnPawtcAs>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SRBXLv-2qd8>

3. 고용보험료 부과일정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DR8_I2BmZo8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kawf486>

"어서와~ 예술인 고용보험은 처음이지?" 시리즈

담당 부서 연락처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예술인가입부
대표전화 02-2097-9250
팩스 0502-223-3203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